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건의 법률안(의안번호 9523, 11233)을 외교통일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건의 법률안(의안번호 13120)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523	김건의의원	2025. 4. 1.	2025. 9. 16.
	11233	김석기의의원	2025. 7. 2.	2025. 9. 16.
	13120	이재정의의원	2025. 9. 18.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09.24.)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11. 2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사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시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조정 및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주관기관과 재외공관이 점검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시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4항 후단 신

설).

다. 주관기관이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재외공관이 유상협력을 제외한 관할 구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정기국회 전까지 해당 보고 결과를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마.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유상협력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u>실시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① ----- ----- ----- ----- ----- ----- ----- <u>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u> ----- -----.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② ----- ----- ----- <u>.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u>
<u><신 설></u>	③ <u>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 ② (생략) <u><신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유상협력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	---